

예 산 총 칙

2018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30,242,456	9,907,274
일반회계	293,843,991	8,815,320
특별회계	36,398,465	1,091,954
공기업특별회계	9,944,987	298,350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944,987	298,350
기타특별회계	26,453,478	793,604
수질개선 특별회계	11,313,202	339,396
주택사업 특별회계	3,862,738	115,882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624,678	18,740
자활기금 특별회계	1,802,000	54,060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7,651,000	229,530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650,257	19,508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458,870	13,766
기반시설 특별회계	32,529	976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58,204	1,746

제 2 조 세입 및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및 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사고이월사업은 별첨 "사고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709,031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복구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